

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

의안 번호	18-113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11. .
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해 주민체감 행정서비스를 확산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「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」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협의회명 :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

나. 구성기관 : 77개 기초자치단체 (2018. 11. 기준)

- (서울) 종로구, 용산구, 성동구, 동대문구, 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은평구, 서대문구, 마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구로구, 동작구, 관악구 (15)
- (부산) 북구, 연제구, 사상구 (3)
- (인천) 동구, 미추홀구, 남동구, 옹진군 (4)
- (광주) 동구, 남구, 북구 (3)
- (대전) 동구, 중구, 서구, 유성구 (4)
- (울산) 중구, 남구, 동구, 북구, 울주군 (5)
- (경기) 수원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양주시, 과천시, 의왕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오산시, 화성시, 시흥시, 군포시, 하남시, 파주시, 여주시, 이천시, 용인시, 안성시, 김포시, 광주시 (21)
- (강원) 춘천시, 홍천군, 양구군, 인제군 (4)
- (충북) 증평군, 음성군, 괴산군 (3)
- (충남) 공주시, 아산시, 논산시, 당진시, 금산군, 부여군 (6)
- (경북) 구미시 (1)
- (경남) 창원시, 거제시 (2)
- (전북) 전주시, 김제시, 완주군, 부안군 (4)
- (전남) 담양군, 영광군 (2)

다. 기 능(제3조)

- 1) 주민체감·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·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·연구
- 2)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
- 3)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·군·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·추진
- 4)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

라. 구성 및 임원(제4조~제6조)

- 1) 구 성 : 지방자치단체 [별표]
- 2) 임 원 : 회장 1명, 감사 1명, 기타 임원
(부회장(복수), 사무총장 1명, 사무부총장(복수))
- 3) 임원임기 : 임기 중 1년, 1회 연임

마. 회의 및 의결(제7조~8조)

- 1)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, 회장단 회의로 구분,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,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/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,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1/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
- 2)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바. 재원 및 부담금(제16조~제17조)

협의회의 경비는 시·군·구의 정기부담금, 특별부담금,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, 부담금 및 특별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~ 제158조

2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95조 ~ 제101조

나. 예산조치 : 2019년 본예산에 연회비 500만원 편성

다. 협의회 운영규약(안) 전문 : 별첨

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(안)

제1조(명칭) 본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(이하"협의회"라고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약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주민체감·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·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·연구
2.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
3.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·군·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·추진
4. 그 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

제4조(구성) 협의회는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"별표"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,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

제5조(임원)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,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.

②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1.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사무총장, 사무부총장을 추천한다.
2. 협의회 규모, 권역별 위원 수 등을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.

③ 부회장은 회장 직무를 보좌하고,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또는 별도로 부회장단이 합의 추천한 권한대행이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 운영실무를 총괄하고, 사무부총장은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직무를 보좌한다.

제6조(임원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부단체장 또는 위원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, 대리 참석자는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.

제7조(회의 및 의결)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, 협의회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,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,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정기위원총회는 상·하반기 1회씩을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.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1/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, 회장단 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집한다.

1. 회장 및 임원의 선출

2. 연간 사업 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

3. 기타 회장단 회의에서 위원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

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
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단 회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안건을 통보하고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.

제8조(회장단 회의)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- ③ 회장단 회의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임원 및 자문위원을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실무를 위임할 수 있다.

제9조(의안의 제출)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안건의 배부)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.

제11조(의견의 청취)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.

제12조(회의결과에 대한 조치) ① 협의회의 모든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,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,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사무국)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-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-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, 급여는 회장단 회의에서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(사무국의 업무)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총회, 회장단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
2.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,회계
3.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
4.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
5.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 사업 제안 및 추진
6. 기타 총회 및 회장단회의에서 위임한 사항

제15조(자문위원) 자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총회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협의하여 위촉한다.

제16조(재원) 협의회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시.군.구의 정기부담금
2. 특별부담금
3. 기타 수입

제17조(부담금) ① 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.

② 부담금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특별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회장단회의에서 협의·결정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.

제18조(회계연도)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9조(예산 및 결산) ① 협의회는 세입·세출예산은 회장단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.

-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- ③ 협의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.

제20조(감사 실시) ① 감사는 매 회계년도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.

- ② 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·군·구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③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제21조(규약 개정)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22조(운영세칙)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용규정)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.

[별표]

『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』 구성 지방자치단체(제4조 관련)

지 역	지방자치단체명	비 고
서울	종로구, 용산구, 성동구, 동대문구, 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은평구, 서대문구, 마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구로구, 동작구, 관악구	15
부산	북구, 연제구, 사상구	3
인천	동구, 미추홀구, 남동구, 옹진군	4
광주	동구, 남구, 북구	2
대전	동구, 중구, 서구, 유성구	4
울산	중구, 남구, 동구, 북구, 울주군	5
경기	수원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양주시, 과천시, 의왕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오산시, 화성시, 시흥시, 군포시, 하남시, 파주시, 여주시, 이천시, 용인시, 안성시, 김포시, 광주시	21
강원	춘천시, 홍천군, 양구군, 인제군	4
충북	증평군, 음성군, 괴산군	3
충남	공주시, 아산시, 논산시, 당진시, 금산군, 부여군	6
경북	구미시	1
경남	창원시, 거제시	2
전북	전주시, 김제시, 완주군, 부안군	4
전남	담양군, 영광군	2